**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검찰 PROSECUTION SERVICE<br>**서울중앙지방검찰청**<br>전문공보관 박세현<br>**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 **보 도 자 료**<br>**2020. 3. 30.(월)** |

| | |
|---|---|
| **제 목** | **검사 성비위 관련 직무유기 등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 |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처분 사건(제10조 제1항 제2호)

-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0조 제2항)
-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사건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 사건관계인의 실명 및 구체적인 지위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2조 제1항 제2호)

※ 2020. 3. 24.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 위 양식에 따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공개의 요건과 범위 기재(제15조 제4항)

※ 해당 부분에 ☑ 표기,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내용 삭제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3. 30.) 2015년경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검찰총장 김진태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각하) 하였습니다.

□ 고발사실 및 불기소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들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신분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검사들로서, 2015년경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 사건을 형사입건 및 징계하지 아니하고 비위자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도록 하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조사 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함 ▧